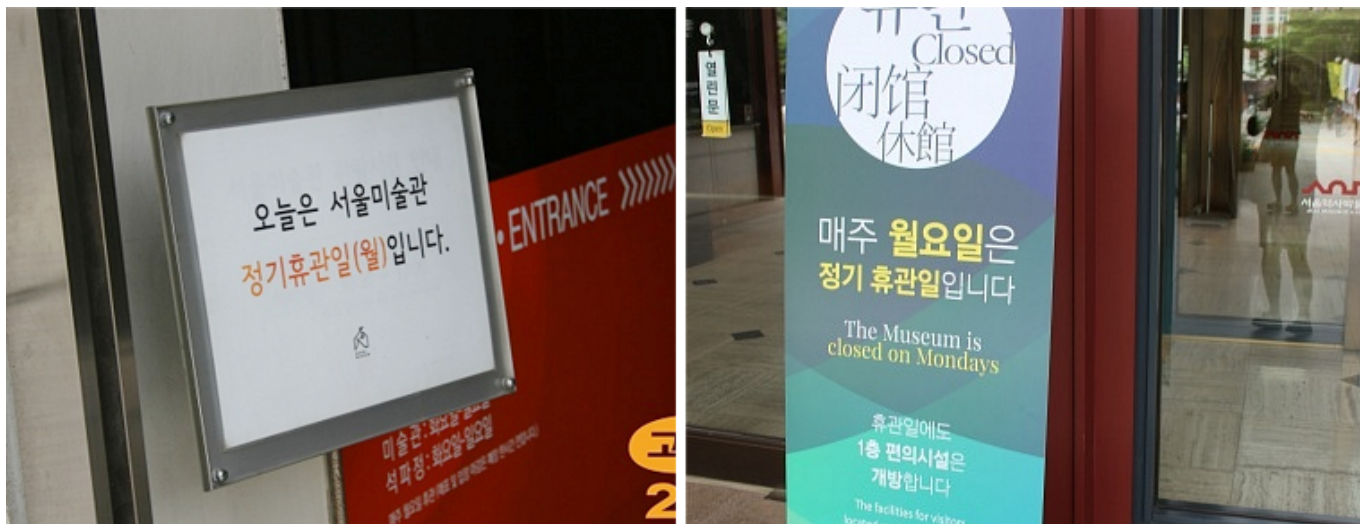


□□ □□□□ (2016.07.19~08.01)

✕ □□□=□□□□□□, □□ □□□ □□



□□□□ ‘□□□□ □□’. □□□□ □□ □□□ □□□ □□□□ □□□□ □□□□ □□□□ □□□□ ‘□□□□ □ □□□□’□□□□ □□□ □□□□. 20□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영향'이 미치는 것을 '영향'이라고 한다. '영향'은 어떤 '사건'에 의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은 '영향'이 있는 '사건'에 의해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은 '영향'이 있는 '사건'에 의해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이 있는 '사건'에 의해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이 있는 '사건'에 의해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이 있는 '사건'에 의해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 [영향] '영향'에 대한 '영향'

x 영향, 영향



AR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AR을 통해 실제 관광지에 있는 사물이나 장면에 가상 캐릭터나 정보를 겹쳐 보여줌으로써, 관광객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R을 통해 '가상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가상 박물관'을 운영하여, 관광객이 현장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AR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다. 또한, AR을 통해 '가상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AR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AR'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AR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R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R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R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사회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0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조는 “본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3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5. 장애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정의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조는 “본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3조](#)

□□□ (□□ □□□□)